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 대상 약관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
2. 시행 예정일 : 2024년 12월 16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주요 변경내용 : 이연퇴직소득의 납입, 인출, 원천징수관련 내용추가, 제11조 청약의 철회 신설, 제12조 위법계약해지 신설, 제14조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반영), 제26조 거래제한 조항 개정, 제27조 관계법규등 준수 개정, 별첨 3, 4 추가.

### 5. 변경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 1 조&lt;생략&gt;</p> <p>제 2 조(용어의 정의) 1~6 &lt;생략&gt;</p> <p>7. “연금수령”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제 14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p> <p>제 2 조 8~10 &lt;생략&gt;</p> <p>제 3 조 &lt;생략&gt;</p> <p>제 4 조(납입 등)</p> <p>제 4 조 1 항 &lt;생략&gt;</p> <p>② 이 계좌는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연퇴직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이체받으며, 이때 이체받은 금액은 제 1 항의 납입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p>	<p>제 1 조 &lt;좌동&gt;</p> <p>제 2 조(용어의 정의)1~6 &lt;좌동&gt;</p> <p>7. “연금수령”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b>제16조</b>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p> <p>제 2 조 8~10 &lt;좌동&gt;</p> <p>제 3 조 &lt;좌동&gt;</p> <p>제 4 조(납입 등)</p> <p>제 4 조 1 항 &lt;좌동&gt;</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제 1 항의 납입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1. 이연퇴직소득 (제 15 조 2 항 2 호에 해당하는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2.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p>	<p>14조→16조 (조문신설에 따른 순번이동)</p> <p>납입 가능 재원 추가. (이연퇴직소득 (제15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p>

<p>③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 17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p> <p><b>제 4 조 4~5 항 &lt;생략&gt;</b></p> <p><b>제 5 조(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b></p> <p><b>제 5 조 1 항 &lt;생략&gt;</b></p> <p>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펀드&gt; 펀드자료실&gt; 공지사항&gt; 투자자예탁금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p> <p><b>제 5 조 3~5 항&lt;생략&gt;</b></p> <p><b>제 6 조~8 조 &lt;생략&gt;</b></p> <p><b>제 9 조(인출 등)</b></p> <p><b>제 9 조 1 항~2 항 &lt;생략&gt;</b></p> <p>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세제외금액</li> <li>2. 제 17 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li> </ol> <p>④ 제 3 항제 1 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제 2 호에 해당하는</li> </ol>	<p>③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b>제19조의</b>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p> <p><b>제 4 조 4~5 항 &lt;좌동&gt;</b></p> <p><b>제5조(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b></p> <p><b>제 5 조 1 항 &lt;좌동&gt;</b></p> <p>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b>고객센터 &gt; 상품자료실&amp;공시실 &gt; 펀드자료실 &gt; 공지사항 &gt;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b>),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p> <p><b>제 5 조 3~5 항&lt;좌동&gt;</b></p> <p><b>제 6 조~8 조 &lt;좌동&gt;</b></p> <p><b>제 9 조(인출 등)</b></p> <p><b>제 9 조 1 항~2 항 &lt;좌동&gt;</b></p> <p>③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세제외금액</li> <li>2. <b>이연퇴직소득</b></li> <li>3. <b>제 19 조에</b>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li> </ol> <p>④ 제 3 항제 1 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p>	<p>17조→19조 (조문신설에 따른 순번이동)</p> <p>홈페이지 경로 변경</p> <p>연금저축펀드 재원 추가로 인한 인출순서 개정. (이연퇴직소득 추가)</p>
---	--	---

<p>금액은 제외한다)</p> <p>2.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p> <p>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17조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p> <p>4. 제 1 호 내지 제 3 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 10 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p> <p>⑤ 제 4 항제 1 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p> <p>⑥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 14 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p> <p>⑦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 15 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p> <p><b>제 10 조(과세제외금액 확인)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1.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제 2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p> <p>2.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p> <p>3. 제 1 호 또는 제 2 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b>제 19 조</b>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p> <p>4. 제 1 호 내지 제 3 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 10 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p> <p>⑤ 제 4 항제 1 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p> <p>⑥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b>제 16 조</b>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p> <p>⑦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b>제17조에</b>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p> <p><b>제 10 조(과세제외금액 확인) &lt;좌동&gt;</b></p> <p><b>제 11 조 (청약의 철회)</b></p> <p>①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가입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lt;별첨&gt;에서 정하는 연체이</p>	<p>17조-&gt;19조로 (조문신설에 따른 순번이동)</p> <p>14조-&gt;16조로 (조문신설에 따른 순번이동)</p> <p>15조-&gt;17조로 (조문신설에 따른 순번이동)</p> <p>금소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철회권 관련사항 반영</p>
---	--	---

<신설>

제 11 조(계좌해지) <생략>

제 12 조(부득이한 인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 3 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 15 조 제 1 항제 1 호 따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2조(위법계약의 해지)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좌해지) <좌동>

제 14 조(부득이한 인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 조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 17 조 제 1 항제 1 호 따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금소법 47조에 의한 위법계약 해지권 반영

순번이동

순번이동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15에서→17조 (조문신설에 따른 순번이동)

<p><b>제 13 조(계좌의 이체)</b></p> <p><b>제 13 조 1항 &lt;생략&gt;</b></p> <p>②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p> <p>1.제 14 조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 2 조제 4 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p> <p>2.제 14 조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p> <p><b>제 13 조 3~6 항 &lt;생략&gt;</b></p> <p><b>제 14 조(연금의 지급)</b>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p> <p>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p> <p><b>제 14 조 2~4 항 &lt;생략&gt;</b></p> <p>⑤ 제 3 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p> <p>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 :</p>	<p><b>제 15 조(계좌의 이체)</b></p> <p><b>제 15 조 1항 &lt;좌동&gt;</b></p> <p>②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p> <p>1.제 16 조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 2 조제 4 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p> <p>2.제 16 조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p> <p><b>제 15 조 3~6 항 &lt;좌동&gt;</b></p> <p><b>제 16 조(연금의 지급)</b>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p> <p>2.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 16 조 2~4 항 &lt;좌동&gt;</b></p> <p>⑤ 제 3 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p> <p>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 :</p>	<p>순번이동</p> <p>14에서→16조(조문신설에 따른 순번이동)</p> <p>순번이동</p> <p>순번이동 및 연금지급 조건 개정.</p>
---	---	--

제 6년차

2. 제 16 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제 14 조 6항 <생략>**

㉔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 15 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 15 조(회사의 원천징수)** ①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 64 조의 4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 12 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제 12 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제 3 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 세 미만	5%
70 세 이상 80 세 미만	4%
80 세 이상	3%

제 6년차

2. **제 18 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제 16 조 6항 <좌동>**

㉔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 17 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 17 조(회사의 원천징수)** ①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 64 조의 4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 14 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 14 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 천 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제 3 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 세 미만	5%
70 세 이상 80 세 미만	4%
80 세 이상	3%

16에서→18조  
순번이동  
순번이동

15에서→17조  
순번이동  
순번이동

이연퇴직소득에대  
한 원천징수내용  
추가

2.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한다.

제15조 2~3항 <생략>

제16조~23조<생략>

**제 24 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5 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나. 이연퇴직소득: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적용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제 2 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 2 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

2.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나. 이연퇴직소득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frac{\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text{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times \text{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frac{\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

제 17 조 2~3 항 <좌동>

제 18 조~제 25 조 <좌동>

**제 26 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계좌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7 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조문신설에 따른  
순번이동

순번이동 및  
거래제한  
방법추가

순번이동 및  
관계법규등에  
금소법 및 그  
하위규정 추가

<p>한다)을 준수한다.</p> <p>제26조~28조&lt;생략&gt;</p> <p>&lt;별첨&gt; 1~2&lt;생략&gt;</p> <p>3. 기타 특약사항</p>	<p>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p> <p>제28조~30조&lt;좌동&gt;</p> <p>부칙&lt;개정 2024.12.16.&gt;</p> <p>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lt;별첨&gt; 1~2&lt;좌동&gt;</p> <p>3. 제 11 조제 2 항의 “&lt;별첨&gt;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연체이자는 민법 제 379 조에 따른 법정이자율을 따른다</p> </div> <p>4. 기타 특약사항</p>	<p>26~28→28~30 순번이동</p> <p>개정시행일 추가</p> <p>&lt;별첨&gt;3.연체이자 정의 추가</p>
---	---	---